

신발 디자인의 등록무효심판 - 공지 선행디자인과 유사성 및 창작용이성 판단: 특허법원

2020. 1. 31. 선고 2019허4574 판결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등록디자인

-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7. 7. 13./ 2018. 4. 9./ 제 952605호
-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집스환자용 신발
- 3) 디자인의 설명,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1과 같다.
- 4) 디자인권자: 원고



등록디자인의 도면 1.1

나. 선행디자인

- 1) 출원일/ 등록일/ 공고일/ 등록번호: 2009. 12. 1./ 2010. 10. 26./ 2010. 11. 1./ 제577372호
-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집스 신발
- 3) 디자인의 설명,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2와 같다.
- 4) 디자인권자: 피고들



선행디자인의 사시도

2. 특허법원 판결요지

양 디자인의 공통점 ① 내지 ④는 깁스 신발의 전체적인 형상을 좌우하는 지배적인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갖는다.

게다가 양 디자인의 공통점 ②, ③ 부분은 대상물품인 깁스 신발의 사용형태와 용도를 고려할 때 깁스 신발의 뒷개부의 형상에 관한 것으로서 수요자에게 잘 보이는 부분으로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을 좌우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양 디자인의 공통점 ④ 역시 대상물품인 깁스 신발의 수요자가 깁스 신발을 착용하였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결착부의 형상에 관한 것으로서 수요자의 많은 주의를 끄는 부분이다. 양 디자인은 두 개의 결착부를 가지고 있고, 각 결착부의 일측에 원형 고정구를 좌우 대칭으로 형성되어 있어 이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준다.

양 디자인의 공통점들 중에서 공통점 ②의 뒷개부 측면의 형상과 공통점 ③처럼 후방 뒷

개부 측면에 일정한 무늬의 통풍구를 형성한다는 창작 모티브는, 대상물품인 겹스 신발과 관련하여 선행디자인에서 새롭게 나타난 참신한 것으로서 그 중요도를 높게 보아야 한다.

양 디자인에는 차이점 ㉓ 내지 ㉔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러한 차이점들은 대상물품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디자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은 미세한 부분에 불과하여 앞서 살펴본 공통점 ① 내지 ④에 의하여 형성되는 공통된 지배적 특징에 따른 유사한 미감을 넘어서는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에 이르는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

고정구의 형상은 고정구의 크기에 비추어 볼 때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디자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은 미세한 부분에 불과하다. 또한 양 디자인의 고정구가 배치되는 순서가 서로 어긋나기는 하나, 방향에만 차이가 있을 뿐 고정구가 각 결합부의 일측에 서로 대칭되도록 위치하여 있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사한 심미감을 넘어서는 정도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달리, 전방 후방 덮개부의 각 하단과 바닥부 뒤꿈치 부

분 및 밑창 전 후단부에 일정한 문양이 형성되어 있고, 양 디자인은 밑창에 형성된 무늬의 형상과 모양이 서로 다르기는 하다(차이점 ㉔. ㉕). 그러나 이는 모두 수요자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에 불과하여, 거래 시와 사용 시에도 수요자들에게 지배적인 미감을 형성하는 부분이라 보기 어렵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볼 때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므로 세부적인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사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등록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선행디자인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서,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첨부: 특허법원 2020. 1. 31. 선고 2019허4574 판결

지재권분쟁 침해대응/감정, 형사/민사소송, 손해배상, One-Stop service, A~Z 수행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